

제보 운영 방침

[제보 운영 방침]

금호미쓰이화학 주식회사는 제보자의 소중한 한마디를 투명경영의 초석이라고 생각하고, 회사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경쟁사, 고객, 공급업체, 협력업체,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다한다. 모든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고 있으며, 온라인,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제보 내용의 처리 과정에 대해 제보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제보자는 제보 사항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 교환 및 문의가 가능하다.

제정일 2024년 6월 30일

총칙

1) 목적

본 방침은 금호미쓰이화학의 제보 절차 및 제보자 보호 제도 등 제보 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금호미쓰이화학은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임직원, 경쟁사, 고객 및 공급업체, 협력업체, 주주 및 투자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집한 모든 제보를 존중하고, 제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는 금호미쓰이화학의 <제보 운영 방침>을 통해 제보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리, 제보자 보호, 조사 절차와 처리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3) 적용 예외 사항

내부적으로 업무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 없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외부기관에 제보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악의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허위로 조작하여 제보하는 행위 (악의의 허위 제보), 회사 및 회사 경영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임직원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제보하는 행위 (단, 임직원 간 불륜, 폭행, 도박, 사기 등 임직원 간 비윤리 행위는 제보 대상), 제보에 대한 조사를 착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조사의 이익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제보실 담당 임원이 판단하는 '조사 부적격' 대상의 제보, 제보 내용의 구체성 및 조사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보관리규정 상 제보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고 제보실 담당 임원이 판단하는 경우의 제보.

제보 운영 방침

총칙

4) 용어의 정의

본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제보자** : “제보자”는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윤리적 행위, 불법적인 활동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회사 제보 채널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를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
- ② **제보시스템** : “제보시스템”은 제보 받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처리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면서 이를 관련 담당 부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관리 체계 또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 ③ **제보실** : “제보실”은 제보 접수, 처리, 조사, 피드백 등 제보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특정 부서나 조직을 말한다.
- ④ **조사 담당자** : “조사 담당자”는 제보 받은 정보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 ⑤ **제보실 책임자** : “제보실 책임자”는 제보가 접수되고 처리되는 전체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제보 접수와 이를 처리하는 조사 단계, 그리고 조사 결과를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는 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제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지시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제보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

1) 신고 의무

금호미쓰이화학의 모든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동 규정에 따라 제보실에 반드시 신고, 제보하여야 한다.

- ①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 방침의 제보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본인이 실행하도록 강압 받은 경우
- ② 본인 외 모든 이해관계자 등 타인의 위법 행위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알게 된 경우

2) 제보 대상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반하는 행위, 사규 및 회사의 내부기준 위반 행위, 불법, 부정행위 혹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인권침해 행위, 사업활동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위, 기타 1호 내지 5호에 준하는 행위 등

제보 운영 방침

제보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

3) 제보 방법

① **제보 경로**: 주요 제보 채널(홈페이지, 전화, 팩스, E-mail, 우편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된 모든 내용은 금호미쓰이화학의 책임부서의 관리 하에 독립적으로 처리된다.

※ 온라인 제보실 금호석유화학 그룹 온라인 제보실(국문/영문 버전), 24시간 운영 (<https://justice.kkpcgroup.com/>)

② **제보 요령**: 실명 제보 - 제보자 본인 및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육하원칙에 의거, 제보 내용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

익명 제보 -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으로 제보가 가능

제보 시점에 이미 진행 중인 부정 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증거자료 없이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만으로도 제보 가능

4) 제보 접수 및 조사

전화를 제외한 경로로 제보 접수 시, 제보실 책임자는 익명 제보 등 제보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자에게 제보 접수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단, 온라인 제보실은 실명 제보 접수 시 제보 접수 안내 문자가 자동으로 제보자에게 발송되게 하며 익명 제보의 경우 익명 제보자와 해당 제보 건 내 댓글 기능을 통해 제보 접수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다.

제보실 책임자는 제보 건 별로 조사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안에 따라 복수의 조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조사 담당자는 제보 접수 내용을 확인하고 기초적 사실 관계를 파악한 후 제보실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실 책임자는 제보실 담당 임원에게 접수 보고하여 제보 접수 사실 및 조사 착수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하며, 제보실 담당임원은 제1장 총칙의 '3) 적용 예외 사항' 및 제보 처리의 제보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제보 접수 시점에 즉시 조사가 불가한 상황인 경우, 제보 접수 보고 시 제보실 담당 임원의 승인을 얻어 부득이하게 조사 착수를 유보할 수 있다.

제보 운영 방침

제보 접수 및 처리 프로세스

5) 제보 취하

제보자 의사 존중 원칙에 의거, 제보자는 조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제보를 취하할 수 있다. 제보자가 제보를 취하한 경우 제보실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제보자 개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보의 내용이 회사 이익에 부합하여 감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의 내용인 위법 행위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제보 내용 일체를 보관, 활용할 수 있다. 단, 관계법령에 따라 제보자 개인정보를 법정 폐기 시점 도래에 맞춰 삭제하여야 한다.

6) 협조 의무

제보실이 제보 조사 진행 중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여 피제보자, 피제보자의 유관조직 등 관련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면담, 소명 등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제보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실 요청 자료의 제출 지연, 고의적인 면담 및 소명 회피 등 조사 방해 행위가 발견된 경우 동 규정 및 인사 규정에 따라 인사팀에 인사위원회 회부하도록 요청을 하여 상응하는 징계 처분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7) 결과 처리 및 통보

조사 결과 피제보자의 위반사항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관련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비방, 허위 등 제보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제보자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안은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한다. 제보 내용의 처리 과정 및 결과는 온라인 제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보실 내에서 추가 의견 교환 및 문의가 가능하다.

제보자의 보호

1) 제보자 비밀 보장

금호미쓰이화학은 내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제보 내용 및 제보자의 인적 사항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 ① **보안**: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제보자를 노출하지 않도록 안전한 보안 체계로 보호되어야 한다.
- ② **제보자 신분 누설 금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보 운영 방침

제보자의 보호

1) 제보자 비밀 보장

- ③ **제보자 색출 금지** :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제보실 등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 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
- ④ **제보실에 의한 제보자 신분 누설 금지** : 제보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제보실)는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⑤ **협조자 보호** :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 관련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 비밀 보장 및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와 관련한 보호를 받는다.
- ⑥ **제보자 신분 비밀 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 : 회사는 제보실 임직원, 인사 관련 업무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 및 일반 임직원 등이 '보안' 내지 '협조자 보호' 관련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

2)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제보실은 내부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제보로 인하여 회사와의 거래 과정 상 경제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 어떠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조치하고 회사의 임직원도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자진 제보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보자는 피제보자나, 관련된 제3자 또는 회사로부터 제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제보실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내부 제보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회사는 진술 등의 방법으로 제보 조사에 협조한 임직원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 제보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 및 조사협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등의 조치를 인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3) 조사 담당자 유의 사항

조사 담당자는 제보 조사 처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확보, 사실관계의 확인 외에 제보 관련 해결 방안, 조치 방안 등 개인적인 의견을 조사 종결 전까지 피제보자 및 피제보자의 소속 팀장 내지 소속 사업장 임원에게 제시하거나 발설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정일 2024년 6월 30일